자체평가 규정

제정 2009.09.01. 개정 2013.12.06.
개정 2010.08.03. 개정 2018.01.19.
개정 2011.09.01. 전문개정 2020.05.07.
개정 2013.09.30. 개정 2023.03.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의한 2년 주기 의무자체평가와 기관평가 인증 기준에 의거한 연간 교육품질 자체평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및 범위) ① 평가대상은 본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크게 다음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대학경영
2. 교육여건(교육 시설 및 자원)
3. 교육과정 및 운영
4. 연구 및 산학협력
5. 학생 지원
6. 지역사회 기여 활동
7. 기타 총장이 부의한 내용

② 자체평가 대상의 적용기간 범위는 평가주기에 맞추어 평가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주기 및 시기) 평가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의무로 하되, 교육품질관리 목적에 따라 매년 시행할 수도 있으며, 평가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평가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기간의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2장 평가조직

제4조(평가조직) ① 총장은 대학의 교육품질 및 성과관리 부서를 자체평가 주관부서로 지정하고, 행정조직 내 각 하위 부서별로 평가영역별 세부 평가 실무를 지원하게 한다.
<개정 2023. 3. 27.>

② 총장은 자체평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체평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하게 한다.

제5조(자체평가기획위원회) ① 총장은 자체평가 기획 및 평가 환류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처장급 보직자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한다. <개정 2023. 3. 27.>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직자의 경우 보직임기로 한다.

④ 기획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체평가운영위원회) ① 총장은 자체평가 수행 및 평가보고서 작성, 기타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하며 위원은 7인 내외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제7조(평가기준) ① 자체평가 기준은 기획위원회에서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하며 기관평가 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할 경우 평가영역, 평가지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7.>

제8조(평가방법) 평가방법은 평가 기준에 따라 행정부서 및 학과가 제출하는 실적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3. 3. 27.>

제9조(평가계획 수립 및 공지) 평가업무 담당부서는 매년 초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평가 계획을 행정부서 및 학과에 공지한다. <개정 2023. 3. 27.>

제10조(평가자료 제출) 평가영역별로 행정부서 및 학과는 평가 1개월 전까지 평가 관련 입증자료를 평가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23. 3. 27.>

제11조(평가실시) 운영위원회에서는 평가항목별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평가업무 담당부서는 부서(학과)에 운영위원회의 자체평가 결과를 공지한다. <개정 2023. 3. 27.>

② 부서(학과)는 공지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개정 2023. 3. 27.>

③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한다.

제13조(평가결과보고) 평가업무 담당부서는 평가 결과를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13조의2(평가결과의 공지) 평가 주관부서는 자체평가 결과를 대·내외에 공지한다.

제14조(기타)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27부터 시행한다.